

전략위원회 규정



주식회사 풀무원

제 1 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정관 제 37 조의 2, 이사회 규정 제 12 조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인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회사는 제 8 조 제 1 항 각호의 주요 투자(이하 "주요 투자")와 중기사업전략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2 조 (역할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 주요 투자 및 중기사업전략,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목표 및 경영 전략을 검토한다.
- ② 위원회는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 및 가치 제고를 위한 과제, 전략, 투자 방향의 검토·논의·검증과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자문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제 3 조 (구 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 인은 사내이사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 시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총괄 CEO 대표이사
 2. 독립이사 중 가장 먼저 위원회에 선임된 이사

3. 제 2 호에 해당하는 이사가 복수일 경우 연장자

제 5 조(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분기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 6 조 (소집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회사의 주요 투자

가. 연결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
또는 출자지분 처분

나. 연결자기자본의 (100 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다. 연결자산총액 (1,000 분의 25) 이상의 자산 취득 또는 처분

라.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이 연결자산총액 (100 분의 5) 이상인 영업양수 또는 양도

마. 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이 연결매출총액 (100 분의 5) 이상인 영업양수 또는 양도

바. 대상 영업부문의 부채가 연결부채총액 (100 분의 5) 이상인 영업양수 또는 양도

사. 자산양수도 해당 금액이 연결자산총액 (100 분의 5) 이상인 자산양수 또는 양도

2. 중기사업전략 및 연간사업계획

3. 그 외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 항의 보고 사항을 이사회에 요약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자문위원 등을 선임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사회, 대표이사와의 관계)

①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요 투자 및 중기사업전략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투자 및 중기사업전략에 관한 검토 결과 및/또는 의견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 11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위원회 지원조직)

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영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규정 제 16 조에 따라 이사회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사회사무국은 간사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 사무 전반을 지원한다.

제 13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 4 조 제 3 항 제 2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